

##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5. 7. 11.	규칙	제 917호
개정	1996. 2. 13.	규칙	제 949호
개정	1997. 3. 26.	규칙	제 975호
개정	1998. 3. 6.	규칙	제 990호
개정	2001. 6. 11.	규칙	제1094호
개정	2003. 1. 10.	규칙	제1136호
전문개정	2004. 4. 17.	규칙	제1162호
일부개정	2005. 6. 18.	규칙	제1189호
일부개정	2006. 3. 24.	규칙	제1201호
일부개정	2006. 9. 15.	규칙	제1211호
일부개정	2007. 9. 27.	규칙	제1225호
일부개정	2010. 6. 28.	규칙	제1281호
전부개정	2011. 8. 31.	규칙	제1306호
일부개정	2012. 12. 18.	규칙	제1349호
일부개정	2013. 11. 20.	규칙	제1373호
일부개정	2014. 12. 24.	규칙	제1410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2. 27.	규칙	제141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11. 6.	규칙	제143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3. 10.	규칙	제1442호
일부개정	2016. 9. 22.	규칙	제1454호
일부개정	2018. 6. 20.	규칙	제1508호
일부개정	2018. 11. 30.	규칙	제1517호
일부개정	2019. 11. 22.	규칙	제1552호
일부개정	2022. 12. 30.	규칙	제162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5. 22.	규칙	제1639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4. 9. 3.	규칙	제1671호
일부개정	2024. 10. 14.	규칙	제1672호

### 제1장 총칙 <신설 2012. 12. 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2. 24., 2015. 11. 6., 2022. 12. 30.>

제2조(사업) ① 안양시 평생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서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2. 24., 2015. 11. 6., 2022. 12. 30., 2024. 10. 14.>

#### 1. 교육사업

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문화예술·건강·교양교육

- 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건강·교양교육
  - 2. 복지사업
    - 가. 이·미용실 운영
    - 나. 경로식당 운영
    - 다. 목욕탕 운영
    - 라. 삭제 <2018. 11. 30.>
    - 마. 시설대관
  - 3. 문화사업
    - 가. 자료의 수집 및 정리·보존
    - 나.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 운영
    - 다. 자료대출 및 정보제공
  -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② 제1항의 사업 중 교육과목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장 평생학습센터 <개정 2022. 12. 30.>

제3조(정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사업의 각 과목별 정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삭제 <2018. 11. 30.>

제4조(수강생 모집 등) 수강생의 모집대상·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2. 24., 2015. 11. 6., 2022. 12. 30., 2023. 5. 22.>

1. 모집대상은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 직장인으로 하되, 가족단위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 모집기간 이후에는 방문접수로 하되, 노인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삭제 <2018. 11. 30.>

제5조(사용신청) ① 학습원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11. 6., 2022. 12. 30.>

1. 강당(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 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
2. 기능·문화예술·건강·교양교육 등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3. 삭제 <2018. 11. 30.>

② 그 밖에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허가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허가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 12. 18.>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일 전일 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반환
2. 수강료의 경우에는 강의개시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의개시일 후에는 강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하되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 반환금액 산식

기납부액-[(수강포기원 제출일 포함 교육진행일수/총 교육일수)×수강료]

3. 삭제 <2018.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수강취소(환불)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18. 11. 30., 2019. 11. 22.>

제8조(교육기간) 시민대상 기능·문화예술·건강·교양교육과 노인대상 문화예술·건강·교양교육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장기: 3개월~5개월
2. 단기: 1개월~2개월
3. 수시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습원의 강사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6. 3. 10., 2022. 12. 30.>

1.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서 포함)로서 해당 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2. 요리, 기능분야는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경력자

제10조(강사의 모집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2. 24., 2015. 11. 6., 2016. 3. 10., 2022. 12. 30., 2024. 9. 3.>

1. 분야별 모집 인원, 자격, 보수 및 위촉기간
2. 모집 일정에 관한 사항
3.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11. 6., 2024. 9. 3.>

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기 중 사퇴,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24. 9. 3.>

[제목개정 2024. 9. 3.]

제11조 삭제 <2018. 11. 30.>

제12조 삭제 <2018. 11. 30.>

제13조 삭제 <2018. 11. 30.>

제14조(이용시간) 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2. 12. 18.]

제15조(휴관) 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국경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2. 12. 18.]

제16조 삭제 <2015. 11. 6.>

### 제3장 도서관 <신설 2012. 12. 18.>

제17조(열람)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좌석발급기에서 열람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퇴실할 때에는 좌석발급기에서 퇴실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0. 14.]

제17조의2(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6.>

1. 도서관 자료실: 09:00~18:00(토·일요일 17:00까지)

2. 도서관 열람실

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07:00~23:00)

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08:00~23:00)

②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

[본조신설 2012. 12. 18.]

제17조의3(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6., 2018. 6. 20., 2024. 10. 14.>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2. 석수·삼덕·호계·비산·어린이도서관: 매주 월요일

3. 평촌·관양·만안·박달·별말·큰샘어린이도서관: 매주 금요일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18조(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24. 10. 14.>

1. 열람실에서 항상 조용히 할 것

2.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 것

3.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

5. 대출받은 도서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말 것

6. 무단집회 및 면회 금지

7. 삭제 <2024. 10. 14.>

8. 삭제 <2024. 10. 14.>

9.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③ 시장은 열람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회원가입) ① 자료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도서관홈페이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대출회원증(별지 제 10호서식)을 발급받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전국도서관통합대출회원(책이음)에 가입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대출회원증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3.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

④ 가족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안양시민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4. 10. 14.]

제19조의2(회원증 발급)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서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온라인회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14.]

제20조(회원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아 회수불능 자료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서관 이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회원으로 등록 후 3년 이상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 등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5. 제19조제2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회원의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0. 14.]

제21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증 소지자에 한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도서는 1명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예외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0. 14.]

제22조(대출정지)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는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0. 14.]

제23조(자료회수 불능처리) 자료를 대출한 회원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자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11. 6., 2024. 10. 14.>

[제목개정 2024. 10. 14.]

제24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

1. 회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목개정 2024. 10. 14.]

제25조(기증자료 등록의 예외) ①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6.]

[제목개정 2024. 10. 14.]

제2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14.>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11. 6.]

부칙 <2011. 8. 31. 규칙 제1306호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제3호의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2. 12. 18. 규칙 제1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0. 규칙 제1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학습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제4조제3호 중 “학습원”을 “교육원”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붙임4)와 같이 한다.

⑨ 및 ⑩ 생략

(붙임4) 생략

부칙 <2015. 2. 27. 규칙 제141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2015. 11. 6. 규칙 제1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0. 규칙 제1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2. 규칙 제1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규칙 제1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30. 규칙 제1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2. 규칙 제1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평  
생교육원”을 각각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원”을 각각 “학습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본문 및 제15조 본문 중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를 각각 “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로 한다.

부칙 <2023. 5. 22. 규칙 제1639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9. 3. 규칙 제1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0. 14. 규칙 제1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삭제 <2024. 9. 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 22.>

## 사 용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용시설				
사용(일시)기간	① 년 월 일(요일) / ② 년 월 일(요일)			
	① 시간 : ~ : (시간) / ② 시간 : ~ : (시간)			
	※ 사용시간은 준비시간부터 마무리 청소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사용(가능)시간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			
사용(목적)내용				
사용(참석)인원	명			
사용(기본)설비				
사 용 료(원)				
<b>【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b>				
<p>본인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p>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물 관리(사용료 징수)                  2.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항목 :                  ◆ 필수정보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5년(회계서류 첨부)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정보 동의 거부시에는 사용신청이 제한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p>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12. 18.>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	사용자 (단체)	기간	사용 시설	이용 인원수	사용 목적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1. 6.>

### 사 용 허 가 서

(제 호)

신 청 인	성명(단체명)	
	주 소	
사용시설		
사용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목적		
사 용 료		

### 사용자 준수사항

1.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그 밖에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교육원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사용료 납부방법: 시중은행(안양소재)

년 월 일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1. 22.>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기관, 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당 초	사용시설		사용일시	
	사용목적		참석인원	
	사 용 료	납부일	원	
납부액				
변경·취소 내역	사 용 료 반환청구액		원	
	시 설 사 용 변 경 내 역			
<b>【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b>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물 관리(사용허가취소)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필수정보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5년(회계서류 첨부)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정보 동의 거부시에는 사용허가 취소신청이 제한됩니다.				
<b>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b>				
동의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의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단체명)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2서식] <신설 2019. 11. 22.>

수강취소(환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강 신청 내역	교육과정	년 제 기 교육		
	교육과목			
	수강료 납부액	원		
취소 내역	취소 사유	취업 / 질병 / 임신(출산) / 이사 / 해외장기출장 기타( )		
	반환 금액			
환불액 입금 계좌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b>【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b>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강생 관리(수강료 환불)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 선택정보 : 주소, 취소사유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5년(회계서류 첨부)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정보 동의 거부시에는 수강취소신청이 제한됩니다.				
<b>☐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b>				
필수항목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선택항목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강좌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8. 11. 30.>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8. 11. 30.>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0. 14.>

### 열 램 표

(○층) ○○○실	(○층) ○○○실	(○층) ○○○실

#### 유 의 사 항

- 퇴실 시 반드시 좌석발급기에서 퇴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퇴관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열람표는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없습니다.

안 양 시 ○ ○ 도 서 관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8. 6. 20.>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0. 14.>

앞 면

<p>도 서 대 출 회 원 증</p> <hr/> <p>○ ○ ○  ○○○○○○○○○○○○○○○                                   </p> <p>안 양 시 장</p>
--

뒷 면

<p>이 용 안 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 시 꼭 지참합니다.</li> <li>○ 도서 대출은 1회 5권 14일간이며 반납일을 준수합니다.</li> <li>○ 자료(부록포함)반납 연체 시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li> <li>○ 대출자료 분실 시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합니다.</li> <li>○ 회원정보 변경 시 도서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p>☎ (031) ○○○○ - ○○○○</p>
--